

# 50대 초반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현황과 활용 계획\*

이 승 호\*\*

이 연구에서는 50대 초반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DC 및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거나, 은퇴 전 이직 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과거에 비해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급하겠다는 근로자가 많아졌지만, 노동시장 취약집단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적정 수준의 퇴직급여 적립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퇴직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확대해야 하지만, 현시점의 퇴직급여가 활용되는 목적, 퇴직급여제도가 지니는 장단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1. 서론

이 글에서는 50대 초반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퇴직급여 가입 및 적립금 실태를 정리하고, 퇴직 전 퇴직급여 사용 및 퇴직 후 퇴직급여 활용 계획,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본다.

실태조사 대상은 50대 초반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전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세대 간 인식 및 가입 현황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이 글은 2024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길현종 외(2024), 『퇴직급여제도 현황과 인식 : 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 중 제5장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eesh99@kli.re.kr).

또한, 50대 미만의 근로자는 생애과정에서 아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관련한 경험을 하지 않은 비중이 높고, 퇴직 이후의 퇴직급여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감액되는 시점에 기존의 퇴직연금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연령대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더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로 확인한 50대 초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성, 기업 규모, 지역 특성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표집하였고, 1세 단위로 동일한 규모를 할당하였다.<sup>1)</sup> 조사는 모바일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2024년 8월부터 약 4주 동안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400명의 근로자가 응답하였다.

## II. 퇴직급여 가입 현황

정부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제도로 확대하였고, 2011년 법 개정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면서 신규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7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2018년과 2021년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2024년에는 향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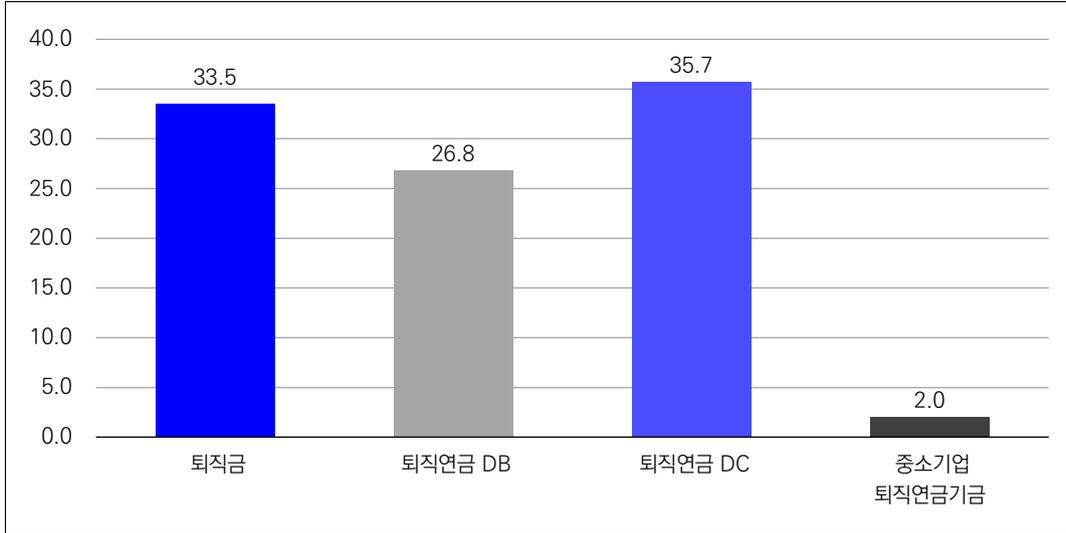
[그림 1]은 응답자의 조사 시점 기준 퇴직급여 유형별 가입 비중을 보여준다. 응답자가 가입한 퇴직급여제도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것은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35.7%)이지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도 33.5%로 큰 차이가 없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은 26.8% 수준이었고,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비중이 2.0%로 가장 낮았다.<sup>2)</sup> 대체로 남성, 고학력 응답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중이 높았고, 여성, 저학력 응답자는 퇴직금 가입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1) 단, 응답자의 직종 특성에서 관리자·전문가 직종과 사무직종 비중이 실제보다 높았고, 생산직 근로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게 포함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응답자 특성은 길현중 외(2024 : 114 참조).

2)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이후 분석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자를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그림 1] 퇴직급여제도 유형별 가입 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표 1〉은 퇴직급여 가입 유형별 적립금 현황을 보여준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액이 약 1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DC형 퇴직급여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액이 약 8천 8백만 원, 퇴직금 가입자의 적립금액이 약 7천7백만 원 수준이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5천만 원 미만 비중이 낮고, 2억 원 이상 적립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퇴직금 가입자는 5천만 원 미만 적립 비중이 퇴직연금 가입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퇴직연금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 가입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표 1〉 퇴직급여 적립금액 현황

(단위 : %, 만 원)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5천만 원 미만	48.4	29.3	38.9
5천만~1억 원	14.3	22.4	24.6
1억~2억 원	24.5	29.3	24.3
2억 원 이상	12.8	18.9	12.2
전 체	100.0	100.0	100.0
평균(만 원)	7,656	10,868	8,817
사례 수	469	375	55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표 2〉 퇴직금제도 운영을 지속하는 이유

(단위 : %)

	사업체 규모					전 체
	1~4인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사외적립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	37.2	43.0	33.7	39.5	43.1	40.1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의 어려움	7.7	9.0	19.3	7.0	10.8	10.7
퇴직연금 도입 절차가 복잡해서	9.0	7.5	4.8	9.3	15.4	8.5
회사의 교육 의무 등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	2.6	5.0	2.4	7.0	7.7	4.7
퇴직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편하므로	43.6	35.5	39.8	37.2	23.1	36.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78	200	83	43	65	46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관측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표 2〉를 보면, 퇴직금 가입자들은 기업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퇴직연금 운영으로 기업의 '사외적립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40.1%로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퇴직금 운영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데,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 사업장에서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음으로, 퇴직금이 퇴직연금보다 일시금으로 받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0%를 차지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모두 일시금과 연금형태 수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퇴직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에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절차가 더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 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 수급을 선호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은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밖에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상의 어려움, 기타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 III. 55세 전 퇴직급여 활용

정부는 퇴직급여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의 중도인출(퇴직연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도 설계상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금과 연금 형태 수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퇴직급여의 연금 형태 수급이 생계유지 및 소득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급여 적

립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립한 퇴직급여를 재직 중에 인출하거나, 이직 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수급한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금액을 적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① 무주택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 가입자의 거주 목적 임차보증금 부담, 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④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⑤ 기타 사유(사업장 휴업, 천재지변·재난 피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로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55세 전에 퇴직급여를 활용하는 다른 경로로, 근로자가 이직 시에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수령한 후,<sup>3)</sup> 바로 계좌를 해지해서 급여를 일반 계좌로 옮기는 방법이 활용된다. 정부는 중도인출이나 퇴직 후 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활용 시에 퇴직급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역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근로자가 부동산 구입 등의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과 일시금을 활용하고 있다.

〈표 3〉은 실태조사 응답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및 중간정산) 횟수와 1년 이상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이직 횟수 분포를 보여준다. 퇴직급여 중도인출 분포에서는 해당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많았고, 1회 경험이 14.8%, 2회 또는 3회 이상 경험한 비중이 각각 4.1%, 1.9% 수준이었다. 반면, 1년 이상 일한 일자리에서의 이직 분포는 이직 경험이 없는 사례가 24.1%에 그쳤고, 3회 이상 응답한 비중이 40.4%로 가장 높았다.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는 경우보다, 일자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더 빈번할

〈표 3〉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이직 횟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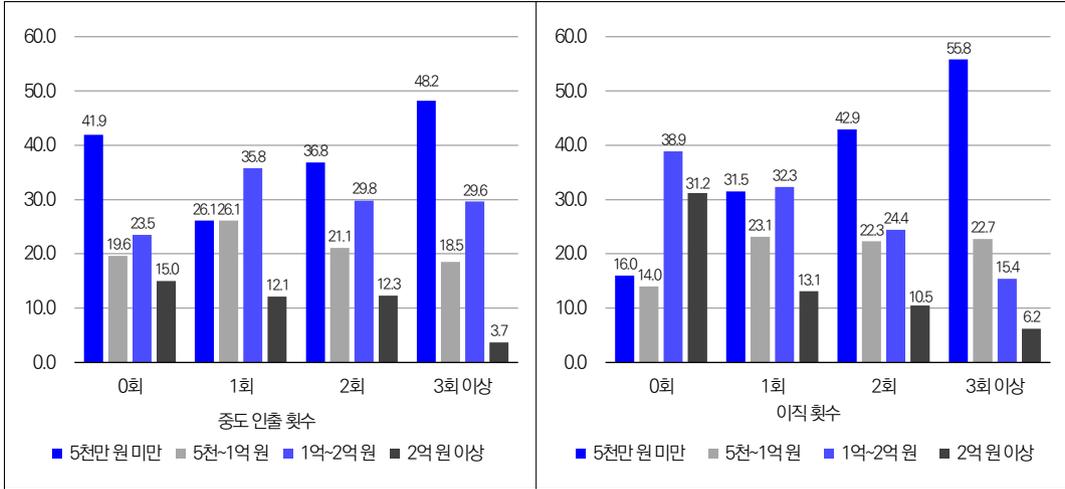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전 체
		0회	1회	2회	3회 이상	
이직 (퇴직)	0회	18.1	4.2	1.2	0.6	24.1
	1회	13.4	3.5	1.1	0.6	18.6
	2회	14.1	1.9	0.6	0.4	17.0
	3회 이상	33.7	5.1	1.1	0.4	40.4
전 체		79.2	14.8	4.1	1.9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3) 2022년 4월 14일 이전에는 이직 시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었다.

[그림 2]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이직 횟수별 적립금액 차이

(단위: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가능성을 시사한다.<sup>4)</sup> [그림 2]를 보면, 퇴직급여 중도인출이나 이직 경험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퇴직급여 적립금액이 적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퇴직급여 중도인출 횟수보다 이직 횟수 분포가 적립금액 수준과 더 분명한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표 4〉는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한 사유를 사용 순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용 순서를 구분한 것은 중도인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급 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퇴직급여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인 비중이 49.8%로 가장 많았고, 임차보증금 비중이 16.2%였으며, 다른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사용한 비중은 적은 편이었다. 두 번째 사용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이 26.2%로 감소했고, 임차보증금 목적이 29.8%로 더 많았다. 장기 요양 및 치료 목적 비중도 11.9%로 증가했는데, 연령대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세 번 이상 퇴직급여 사용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급과 기타 수급 비중(27.1%)이 크게 증가했다. 기타 목적 안에서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2012년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5〉에서는 응답자가 과거 이직 과정에서 수급한 퇴직급여의 사용처를 유형 및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유형을 추가로 구분한 것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급여 및 수급 시기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퇴직금은 수급 횟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지만, 퇴직연금

4) 퇴직급여를 수급한 IRP 계좌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여기서의 이직 횟수가 곧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 횟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4〉 55세 전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한 이유

(단위: %)

	55세 전 퇴직급여 사용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주택 구입	49.8	26.2	10.4
임차보증금	16.2	29.8	22.9
장기 요양 및 치료	4.5	11.9	10.4
파산 및 개인회생	1.7	2.4	2.1
회사 요청	15.5	16.7	27.1
기타	12.4	13.1	27.1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표 5〉 이직 과정에서 수급한 퇴직급여의 사용 목적

(단위: %)

	퇴직금			퇴직연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노후 준비 위해 저축	21.0	25.9	22.4	42.3	38.9	39.3
주택 구입	9.1	6.1	4.9	13.5	9.7	8.4
주거 임차	7.7	5.7	4.0	1.9	2.8	3.7
부채 해결	21.5	23.5	27.9	30.8	23.6	21.5
장기 요양 및 치료	1.2	0.7	0.7	0.0	0.0	0.5
여가	13.8	11.1	10.9	1.9	2.8	5.8
내구재 구입	2.3	3.7	5.0	0.0	1.4	3.7
취업 준비	13.9	11.5	12.2	3.8	6.9	5.8
자녀 교육	3.8	7.0	8.3	1.9	8.3	7.3
기타	5.8	4.6	3.7	3.8	5.6	4.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은 수급 횟수가 많더라도 퇴직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수급 시점에 있어서도, 퇴직금 수급은 30대 이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퇴직연금 수급은 40대 후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직 과정에서 수급한 퇴직급여는 재직 중 중도인출에 비해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모든 순서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과 부채 해결 목적으로 사용한 비중이 높았고, 취업 준비와 여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재직 중 중도인출이 주택 구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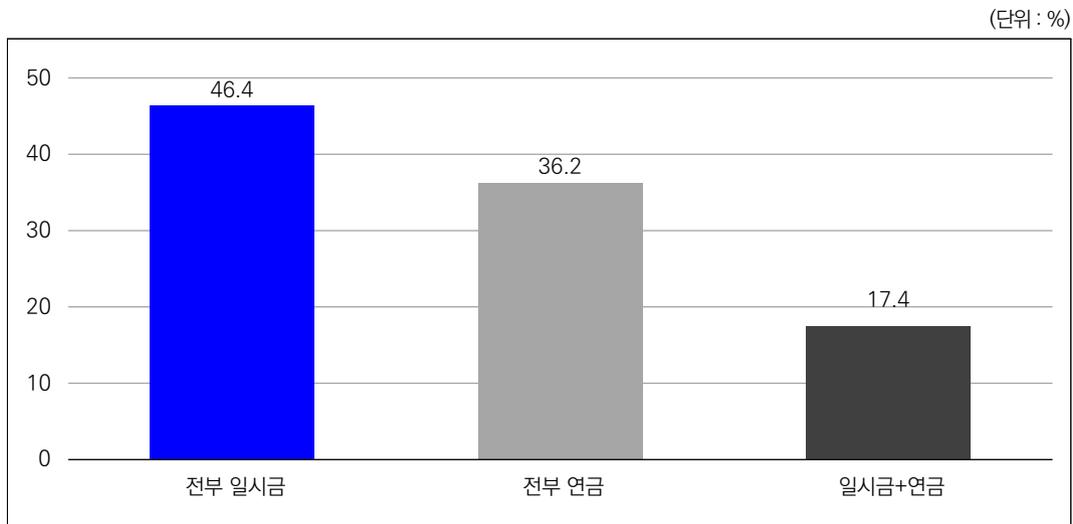
나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사용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퇴직연금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세 차례 이상 이직하더라도 노후 준비 저축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다. 퇴직연금을 수급한 시기가 퇴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고령이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를 더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 IV. 55세 이후 퇴직급여 수급 계획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비중은 당해년도에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계좌 수 기준으로 2020년 3.3%에서 2023년 10.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sup>5)</sup> 퇴직급여의 연금 형태 수급률 개선은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퇴직급여가 한 축을 담당하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림 3]에서는 실태조사 응답자들이 55세 이후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을 계획인지 보여준다. 퇴직급여를 전부 일시금으로 수급하겠다는 응답이 여전히 46.4%로 가장 많았지만, 전부 연금으로 수급하겠다고 응답한 비중도 36.2%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일부 일

[그림 3] 55세 이후 퇴직급여 수급 계획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5)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5. 16),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 원, 5년간 2배 성장」.

시금, 일부 연금 형태로 수급하겠다는 비중(17.4%)까지 합하면,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급하겠다는 비중은 53.6%에 달한다. 연금 수급을 희망한 응답자 모두가 실제로 퇴직 시점에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급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금 형태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집단에서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기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연금 형태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에서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려는 이유를 정리하였다. 퇴직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일시금으로 수급하려는 이유는 적립금액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부채 해결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55세 전 퇴직급여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체로 퇴직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수급하려는 집단에서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적립금액이 적은 집단일수록 부채 해결이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는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급하겠다고 응답한 집단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적립한 퇴직급여를 전부 또는 일

〈표 6〉 퇴직급여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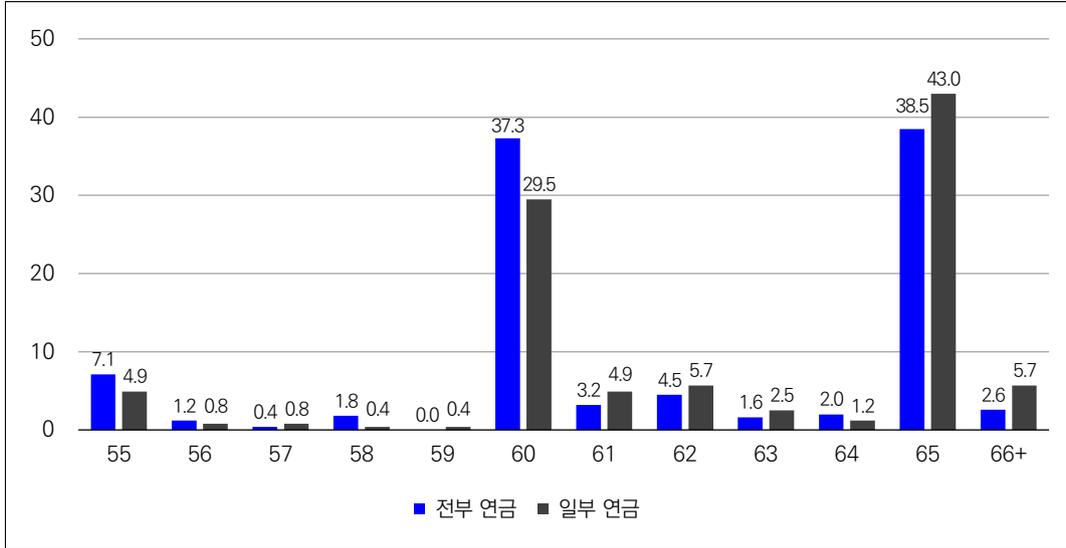
(단위: %)

	전부 일시금	일부 일시금	전부 일시금 수급 선호(N=649)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1억~2억 원	2억 원 이상
주택 구입	8.3	7.4	5.2	12.2	13.7	6.0
주택 보증금	1.5	4.1	1.5	1.5	2.4	0.0
부채 해결	23.6	27.5	23.6	26.7	21.0	22.0
장기 요양 및 치료	1.4	0.8	1.7	1.5	0.8	0.0
자녀 교육비	5.6	4.9	4.7	5.3	9.7	2.0
자녀 결혼자금	3.5	11.1	3.8	2.3	3.2	6.0
적립금액이 적어서	32.1	23.8	32.3	32.8	30.7	32.0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14.2	7.8	18.6	9.2	9.7	8.0
창업자금 마련	3.2	4.1	2.3	3.1	4.0	8.0
기타	6.6	8.6	6.4	5.3	4.8	16.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649	244	344	131	124	5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그림 4] 퇴직급여 수급개시연령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부를 연금으로 수급하는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의 수급 개시 시점으로 65세 또는 60세를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 55세부터 연금을 수급하겠다는 사례를 포함해서, 두 집단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2033년 이후 기준) 이전에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급하기를 희망하였다.

공적연금이 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하는 시점까지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개인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급 시에 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정해진다. <표 7>은 퇴직급여의 연금 수급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고려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급기간과 월평균 연금 급여액 분포를 보여준다. 퇴직급여 전부를 연금으로 수급하려는 근로자는 20년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선호하는 비중이 53.7%로 절반을 넘었고, 10~14년간 연금을 수급하려는 비중이 22.7%, 15~19년 연금 수급 비중이 15.6%를 차지했다. 일부만 연금 형태로 수급하려는 근로자 집단에서도 양상은 비슷했지만, 20년 이상 수급 계획 비중이 낮았고,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을 계획하는 비중은 더 높은 편이었다.

예상하는 퇴직연금의 월 급여 수준 분포는 비슷했는데, 두 집단 모두 100~200만 원 사이의 퇴직연금 월 급여를 예상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다.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 수준이 60만 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퇴직급여의 연금 형태 수급 확대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일부 집단에서는 노후 생계유지의 주된 소득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퇴직급여 연금 형태 수급의 세부 계획

(단위 : %)

		전부 연금	일부 연금
수급기간	5~9년	8.1	12.3
	10~14년	22.7	25.8
	15~19년	15.6	21.7
	20년 이상	53.7	40.2
월 급여액	100만 원 미만	30.8	25.8
	100만~200만 원	39.8	45.5
	200만~300만 원	23.1	20.9
	300만 원 이상	6.3	7.8
전 체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 V. 퇴직급여제도의 개선방향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성격 규정과 개선 방향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의 〈표 8〉에서는 근로자가 인식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성격에 대해 정리하였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제도는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가깝다는 응답이 전체의 31.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퇴직급여가 재직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적립한 후불임금이라는 응답이 25.4%를 차지했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비중이 21.4% 수준이었다. 장기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보상(11.1%)이나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10.5%)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표 9〉에서는 퇴직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섯 가지 주장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퇴직급여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에 가장 많이 동의를 표했다. ‘매우 반대’를 포함한 ‘반대’ 입장은 3.9%에 불과했고, ‘매우 동의’를 포함한 ‘동의’ 비중이 71.5%에 달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값은 4.00으로 질문한 개선 방향 중에 가장 높았다. 다만, 퇴직급여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연금 형태 수급 확대(평균 3.79)와 퇴직 전 중간 사용 제한 확대(평균 3.38) 방향에 대한 동의는 그보다 낮았다. 특히, 퇴직급여 중간 사용 제한에 대한 동의 비중은 42.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반대 입장을 보인

〈표 8〉 퇴직급여제도 성격에 대한 인식

(단위 : %)

	1순위	1순위+2순위
공적연금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는 목적의 노후소득보장제도	31.6	25.5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부터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	21.4	23.9
사업장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퇴직금이 체불될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	10.5	12.4
재직 중 임금의 일부를 적립한 것이므로 지연된 임금(후불임금)에 가까움	25.4	23.2
근로자가 장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에 해당	11.1	15.1
계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표 9〉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 %)

	매우 반대	반대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평균
퇴직급여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0.8	3.1	24.6	38.4	33.1	4.00
퇴직급여제도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급하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9	6.2	29.0	36.4	26.5	3.79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제도 요건이나 규모(인출액) 등을 현재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3.7	13.6	39.8	26.6	16.3	3.38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0.9	4.1	30.1	36.9	28.0	3.87
수익률 개선을 위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전문가 등이 운용하는 투자일임, 기금형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1.4	6.9	37.3	37.1	17.3	3.62
수익률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사업자 범위(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를 확대해야 한다.	2.6	8.0	32.0	39.5	17.9	3.62

주 : 평균은 매우 반대를 1점-매우 동의를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4), 「퇴직급여 및 노후 준비 실태조사」.

응답자 비중이 17.3%로 다른 제도 개선방향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퇴직연금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률 개선 방안으로는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54.4%의 응답자가 동의했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 참여를 위한 사업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57.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두 개선 방향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3.62로 동일했다.

## VI. 결 론

이 글에서는 50대 초반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가입 유형 선택, 재직 중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선택, 이직 시 연금계좌 유지 선택, 퇴직 후 퇴직급여 활용 방식 선택이 생애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정리하고, 퇴직급여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퇴직급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지만, 은퇴 전 퇴직급여의 일시금 활용에 대한 근로자 측면의 욕구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퇴직급여로 의미 있는 수준의 연금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적립금액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퇴직급여의 중도인출(및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취약 집단에 속한 근로자일수록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 다수는 부채 해결이나 주택 임대료, 취업준비 등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은퇴 전 퇴직급여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정책 대안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더해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연금 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퇴직연금을 노령연금 수급 전 시기의 소득보장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 경우 퇴직연금은 단순히 다층 연금제도의 한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 취약집단에 속한 다수의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수급할 만큼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급여가 지니는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가 퇴직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

### [참고문헌]

길현종 · 이승호 · 이영수(2024), 『퇴직급여제도 현황과 인식 : 수준과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